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I. 들어가면서

중국 국적법은 198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이래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에 대한 근거 법률이 되고 있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중국적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 시행 당시에는 중국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은 중국인의 해외진출이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기가 되었다. 해외유학이나 사업상 장기출장, 친지방문, 결혼 등의 원인으로 출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근간이 되는 외국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결국 고급 인재의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주장과 국적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중국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즉시 중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오래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의 재취득 절차가 어렵고, 국적회복 신청만이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특히,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한국인의 중국 국적회복에 대한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의 국적법은 총 18개 조항의 원칙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급의 규정이나 공안부·외교부 등의 부문규장급의 실시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

아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법에서 국적회복 신청의 접수 기관을 시·현급의 공안국 또는 해외 공·영사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는 공안부가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절차상 권한 소재가 불명확하다. 공안부는 해외 공·영사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 공안부나 공안부·외교부 차원의 실시세척이 없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 공안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시·현급 공안국이나 공·영사기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중국 국적회복과 관련된 법규와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고, 중국 국적회복 절차상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국적회복절차 관련법규의 내용

1. 중국 국적법

1980년 9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회 회의에서 비준되고 공포된 중국 국적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국적법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로 개정된 바가 없었으며, 이중국적 금지의 원칙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법상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바, 외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국민은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한국에서와 같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여지나 국적의 재취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¹⁾ 따라서 중국국적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하여서만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일반 규정

중국 국적법 제3조와 제9조는 일반 규정으로서 제3조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9조에서는 외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 즉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국적회복과 관련된 원칙적 규정

동법 제13조와 제14조는 중국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원칙적 규정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국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1) 한국의 국적법도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외국 국적의 포기 기간이나 국적 상실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국적 재취득을 인정하고(제10조, 제11조), 미성년자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제12조)을 두고 있어 국적상실이나 회복과 관련한 절차를 중국 국적법 규정에 비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 때에도 중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동시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중국 국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국적회복 관련 수속 신청을 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접수기관과 심사·허가기관

동법 제15조에서는 접수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심사기관과 허가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내의 해당 시·현급 공안국 또는 국외의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 중국 국적회복 신청 접수기관이 된다. 또한, 중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중국 공안부의 심사·허가를 거쳐야 하며, 공안부는 그에 따른 국적회복 허가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위의 규정뿐이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각 시·현급 공안국이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기타 관련 법규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관련 법규는 [중국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1986년 12월 3일 국무원 비준,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외교부 공포, 1994년 7월 13일 국무원 개정 비준, 1994년 7월 15일 공안부·외교부 공포)뿐이며, 동 세칙에서도 국적회복신청과 관련된 요건

이나 절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동 실시세칙은 국적회복신청시 소요되는 비용문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된다.

1) 국적회복 절차와 관련된 규정

공안부·외교부의 [중국국민의 외국 여권 불법 소지에 관한 문제의 통지(关于中国公民非法持用外国护照有关问题的通知)], 공안부의 [국적법의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시행초안)(关于实施国籍法的内部规定试(行草案))](81) 공안부 정부보고 초안 50호), 공안부6국의 [국적 신청의 접수·심사·허가 절차와 주의사항(关于受理审批国籍申请的程序和注意事项)]에 관한 공고(공안부 출입국관리처[1992]898호), [신판 국적증서의 사용에 관한 통지(关于启用新版国籍证的通知)](공안부 출입국관리처[2000]909호) 등이 국적회복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지만, 각 지역 공안국이 위의 규정들 모두를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안국 사이트마다 그 근거규정을 다르게 들고 있다. 하이코우시(海口市)의 예를 들자면, 하이난성(海南省) 공안청의 [외국인 화교 국적회복수속의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办理外籍华人复籍手续的通知)]((88) 하이난성 공안청 출입국관리국 001호)와 국적법을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이에 따라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현급 공안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각 법규에 대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 비용의 법적 근거

[중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제53조는 외국인이 비자나 증서를 신청하거나 그 기간 연장·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와 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공안부와 외교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국정부와 비자 발급비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의 신청 비용에 대하여서는 그 협정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별 관련 규정의 예로는 강소성 재정청·공안청·중국은행강소성분점의 [공안 출입국 증명서 발급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公安出入境证照收费管理的通知)], [공안계통 행정사업성 비용수익 목록과 관련한 통지(关于公布公安系统行政事业性收费目录的通知(苏价费[2002]224号))]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이코우시의 경우에는 비용산정기준과 근거를 공안부의 [비자 관련 인지의 사용에 관한 통지(关于启用贴纸签证的通知)](공안부[2000]233호)와 [공안기관 비자 관련 업무규범(公安机关签证工作规范)]으로 두고 있다.

III. 중국 국적회복의 신청 요건과 절차

국적회복 신청 요건은 국적법에 그 일반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 공안부의 요건 또한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15조와 제16조에 국적회복 처리기

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기관의 권한은 크게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처리 절차에 있어 근거규정이나 처리기간, 비용, 요구되는 증명자료 등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법규나 실시세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실질적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시·현급의 공안국이 공시하는 내용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시·현급의 공안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중국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재외공사관 내지 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해당 접수기관은 초심에 해당하는 심사를 진행하여 제출된 제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성·자치구급 공안청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성·자치구급 공안청은 재심을 진행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안부에 그 심사·허가를 요청한다. 공안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공안부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를 해당 접수기관에 전달하여 신청자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지역 공안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국적회복 신청 요건

1) 신청 대상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 신청의 대상은 중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외국인이 된다. 그

러나, 각 시·현급 공안국의 규정 중에는 국적회복 신청의 대상을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외국인 화교와 무국적 화교로 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무국적자의 중국 국적회복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다만, 국적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해석을 통하여 국적회복 신청 요건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다. 한편,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었던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의 가입에 의한 국적 취득문제가 될 뿐 국적회복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의 대상이 아닌 국적변경의 대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서는 절을 바꾸어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제출 서류

중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외국여권과 외국인 거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간 출국 중 외국여권을 취득한 중국 국민은 국적인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각 시·현급 공안국마다 다소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략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국적회복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서면 제출
- (2) 여권발급국의 국적취득증서의 제시

- (3) 여권발급국의 거주정착증명서 또는 최소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증명 자료 제시
- (4)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이상의 증서, 증명서, 증명자료 등은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접수기관의 처리 절차

1) 국적 인정 처리 절차

- (1) 본인의 국적 관련 증서 제출
- (2) 본인의 국적과 관련된 문제의 서면 설명과 해당 증명 자료 제출
- (3) 현·시급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 [중국 국적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소속국적을 인정하여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 (4) 현·시급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 [중국 국적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지한 해당 국가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처리절차를 진행한다.

2) 국적회복의 접수절차

- (1) 본인이 작성한 국적회복 관련 신청서면과 관련 증서·증명자료(외국 여권과 외국인거류증 사본)를 국적회복신청서 3부와 함께 제출하고, 본인의 3.5cm * 5.3cm 사진 4매(심사용 3매, 증서발급용 1매)도 제출한다.
- (2) 신청인은 국적회복 증서에 대한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접수기관은 국적회복증서의 교부와 동시에 신청인이 소지한 외국 여권과 외국인거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3) 국적회복신청과 관련된 비용의 산정 기준
국적회복신청 수속을 하는 경우, 수속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산정 기준에 대하여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접수비와 증서발급비를 받지 않는 지역(宜春市)도 있는 반면, 웨이난시(渭南市)의 경우에는 접수비 20위안, 허가증발급비 100위안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의 경우에도 100위안의 발급비만을 명시하고 있다. 난닝시(南宁市)의 경우에는 접수비 20위안만을 공시하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절강성과 강소성 산하의 각 시·현급 공안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증서발급비 200위안을 공시하고 50위안 정도의 접수비를 공시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접수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이코우시(海口市), 표쉐이현(溧水县) 등 일부 공안국에서는 비용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공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안국 사이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현급 공안국에 사안별로 문의하여야만 한다.

3. 심사·허가 절차

1) 초심절차

시·현급 공안국은 국적회복의 신청접수를 받

은 후, 신청인의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처리의견을 표명하여 서면으로 성·자치구 공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와 심사, 재심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서는 일반에 공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많다.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각 시·현급 공안국의 규정이나 성·자치구 공안청의 규정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카이펑시(開封市)의 경우, 접수한 8시간 이내에 초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초심은 56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안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성 공안청의 심사기간을 제외한 8일 이내로 하고 있어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한편, 하이코우시(海口市)의 경우에는 시공안국은 20일 이내에 성공안청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둥관시(东莞市), 쿤밍시(昆明市)의 경우에는 각각 접수일로부터 90일(조사기간 제외),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현 공안국에서는 이러한 기간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2) 재심과 허가 절차

(1) 성·자치구 공안청은 현·시급 공안국이 제출한 서면 보고에 대하여 재심을 진행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경우, 그 처리의견

맞춤형 법제정보

을 표명하여 재심결과를 확인하고 공안부에 허가를 요청한다. [국적 신청의 접수·심사·허가 절차와 주의사항]에 관한 공고 제 2조는 “각 성·자치구 공안청은 요건에 따라 시·현급 공안국의 조사 보고와 관련 신청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재심을 진행하고 그 내용에 실제로 이상이 없는 경우,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심서류의 요건을 갖춰 공안부에 허가를 요청한다. 재심서류에는 성·자치구 공안청의 날인이 요구된다”고 규정하여 재심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다.

(2) 중국 국적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회복의 신청에는 중국 공안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 허가를 득한 때에 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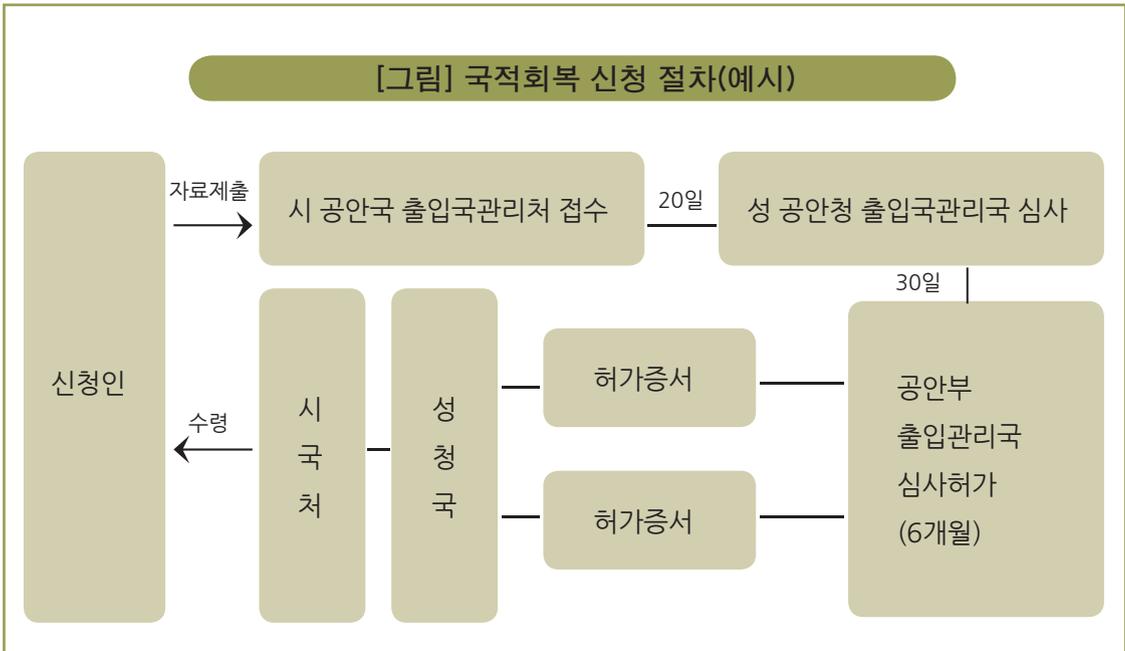
부는 중국국적회복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접수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3) 허가의 유형

당사자의 중국 국적회복 신청의 이유와 그 증명 자료에 따라 중국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허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 (1) 당사자가 중국 국민의 근친속인 경우
- (2) 당사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수속을 진행 중인 경우
- (3) 당사자가 중국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하였거나, 중국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원천이 있는 경우
- (4) 당사자가 국외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귀

[그림] 국적회복 신청 절차(예시)



- 국하여 생활하려 하는 경우
- (5) 당사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이고, 중국국적의 부모를 따라 중국 호적을 만들기 위한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 (6) 중국 공안부가 인정하는 중국 국적회복 허가 기타 유형

IV. 국적회복절차와 관련한 중국 국적법상의 특징과 유의점

1. 이중국적의 부정

중국 국적법 제3조와 제9조는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 신분증과 해외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²⁾ [중국 국적법]상에는 이러한 틈새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시세칙 등의 구체적인 하위법규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중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중국국민의 외국 여권 불법소지에 관한 문제의 통지], [국적법의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시행초안)], [국적 신청의 접수·심사·허가 절차와 주의사항]에 관한 공고, [신판 국적증서의 사용에 관한 통지] 등의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인은 [중국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외에 그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³⁾ 따라서 보다 상위의 보편적인 규정의 제정이 요구되는 한편, 관련된 규정 전체 내용을 공안국 사이트에 공시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재외 공·영사관의 국적회복 절차에 관한 권한 범위

중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재외 공·영사관은 국적회복 신청의 접수기관이 된다. 그러나 공안부 규정 외에 외교부의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국 공안부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절차 내용에서 재외 영사기관에 국적회복에 대한 심사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 2) 刘铭盛, 贾海涛, “国际社会国籍法变化趋势与我国国籍政策调整设想”, 「广东行政学院学报」, 第17卷第6期, 2005. 12, 62쪽; 吴报定,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与国籍冲突问题”,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84年 第3期, 57쪽; 生雅利, “中国的国籍法原则刍议”, 「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 2006年 第1期, 84쪽; 刘国福, “国际国籍法的新发展与我国国籍法的渐进改革”, 「华侨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年 第1期, 55쪽.
- 3) 马振东 外, “我国【国籍法】主要内容的解读及相关问题的思考”,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第14卷第6期, 2004. 12, 67쪽.

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외 중국 공·영사 기관에 중국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사 기관의 권한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국적상실에 대한 과도기간의 부존재

중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 일정한 과도기간을 거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중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제9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오래지 않아 이혼하게 된 때에도 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되며, 중국 국적을 원할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 국적법 제11조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장 1년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적법의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개인이 친치 방문 등의 이유로 단기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도 생활 편익상의 이유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중국으로 귀국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외국국적취득과 관련된 문제

중국 국적법 제5조는 부 또는 모가 중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중국 공민이더라도 외국에 정착하여 거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출생 즉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중국 국적은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부모가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중국 국적을, 자녀는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급인재 유실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나, 현행 국적법상으로는 부모가 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때에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동조에서 '정착하여 거류하고 있는(定居)'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⁴⁾ 법규정상 정확한 기간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부



4) 미국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라는 것은 5년 내의 기간 동안 연속 반년 이상 출국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고, 거류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법률은 이러한 거주기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요구한다(宋錫祥, "论中国【国籍法】的发展与完

모가 외국 유학이나 친지방문, 사업상방문을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 즉시 외국 국적을 취득할 뿐 중국 국적은 취득할 수 없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이에 반해, 한국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규정에 따르면 최대 만 22세까지 복수국적 상태가 가능하다).⁶⁾

5.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의 중국 국적 취득 문제

1999년 7월 1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시행된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역 기본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기본법(中华人民共和国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 제13조에서는 특별행정구역 내에 중국 외교부 산하의 외국 관련 업무 처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6년 5월 15일, 중국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 19차 회의를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홍콩특별행정구역에서 실시되는 ‘중국 국적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在香港特别行政区实施的几个问

题的解释)]을 정한 바 있다. 동 해석 제5조와 제 6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역의 중국 국민의 국적변경은 국적 관련 기관의 접수와 심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적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역의 출입국사무처가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따라서 홍콩의 중국 반환 이전에 영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영국 국적을 소지한 홍콩주민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 내에서 외국인으로 가질 수 있는 영사보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9일, 중국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역에서 실시되는 ‘중국 국적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在澳门特别行政区实施的几个问题的解释)]에서도 홍콩 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카오 주민은 중국과 포르투갈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영사보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해외에 있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중국계혈



善, 「政治与法律」2008年第1期, 78쪽). 한국 국적법의 경우에도 최저 1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된다.

- 5) 马振东 外, “新形势下完善【国籍法】的思考”,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第17卷第2期, 2007. 4, 73.
- 6) 叶氢, “关于完善【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的几点思考”, 「广西社会科学」, 2007年第5期, 2007. 5, 55쪽.
- 7) 许育红, “旅居海外原香港居民 如何处理国籍事宜”, 人民日报海外版, 2008年 5月 10日, 第006版, 读者桥.
- 8) 许育红, “旅居海外原澳门居民 如何处理国籍事宜”, 人民日报海外版, 2008年 5月 31日, 第006版, 读者桥.

통인 경우에는 재외영사관에 중국 국적 확인의 공증을 신청하면 되고, 중국계 혈통이 아닌 주민의 경우에는 국적변경에 해당하는 절차를 통하여 홍콩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주민 신분으로서의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 계혈통이 아닌 특별행정구역의 주민이 특별행정구역 내의 국적신청기관에 국적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중국 국내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중국 영사기관에 중국 국적 가입 또는 회복 신청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국 국적법상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규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된다.

6.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혈통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

2004년 8월 15일부터 중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Green C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⁹⁾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중국 관련기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안부·외교부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학력, 고급인재에 대한 영주권을 허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기관이 이를 허가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¹⁰⁾

V. 맺음말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이나 중국의 국적법 모두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중국 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한국 국적법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포기기간과 국적의 재취득 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급박한 상황변화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국적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 절차에 따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적회복절차



9) 杨树明·印辉, “双重国籍及其法律实践”, 「南京师大学报」(2006年5月第3期), 2006. 5. 36면; 陈凤艳, “对我国现行国籍管理制度的思考”(http://www.cnki.net), 190면.

10) 中国“录卡”门槛高 欲申办者须详细对照条件(http://news.sina.com.cn)

는 국적재취득이나 복수국적선택의 문제에 비하여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되는 기간도 짧지 않다.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 관련 규정들은 이중국적 취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하위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국적회복 신청시에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국적회복 절차는 접수·심사·재심·허가로 나누어져 있어, 국적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적회복의 절차나 요건이 각 시·현급 공안국이나 재외 중국 공·영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중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

편, 그 구체적인 해당기관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상세한 절차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이 사이트에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 국적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중국 국적회복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외국 국적 취득시에 미리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다.

김 명 아

(중국 산둥대학교 법과대학 외국인 교수, 법학박사)